

휘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총론(안)

□ 학생생활규정 적용

-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함
- ‘학생생활규정의 학생 포상,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 25조 4항에 따라 상·별점제도는 학칙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제·개정하며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징계는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 학생생활규정의 의의

- 학생 :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는 법규적 성격이자,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동력
- 학부모(보호자)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과 자녀의 학교생활교육에 있어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
- 교직원 :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기위한 규범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이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

□ 학생생활규정의 원칙

-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되어야 함

□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¹⁾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²⁾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³⁾

-
- 1)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2005.1.29.>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징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교육부의 생기부 훈령 등)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⁴⁾

□ 학생생활규정 구조

1. 학생생활규정

- 제1장 총칙
- 제2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운영 및 포상과 징계
- 제3장 학교생활교육
-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2. 학생자치활동 규정

- 제1장 총칙
- 제2장 학생자치회
- 제3장 대의원회
- 제4장 학생회
- 제5장 학급회
- 제6장 학생자치법정회
- 제7장 재정
- 제8장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항(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4항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름
 - 세부절차는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개정판) 참조(교육부, 2014. 2월)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단, 관계 법령과 인권조례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1.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회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③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 및 교직원 등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운영 및 포상과 징계

제6조(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본교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 인성교육부 부장을 감사로 하며, 기록은 인성교육부 기획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직원의 의무) 본교 교직원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직원 조회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산하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담당부서	협 의 회	담 당 업 무
인성교육부	학생선도협의회	포상, 상벌(징계), 분쟁 조정, 학생회 지도
	복지, 급식 협의회	복지, 급식
	성교육 협의회	성폭력 예방, 양성 평등 교육
1학년부	교복 공동구매 협의회	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

③ 본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각 협의회 회장은 인성교육부장으로 하되 학생 선도협의회장은 교감으로 한다.
2. 협의회 개최 시 필요한 인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 혹은 협의회장이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칙에 따로 인원을 정한다.
3. 협의회는 인성교육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성교육부장 유고시 교감 또는 인성부 기획이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모든 협의록은 서기를 임명하여 기록한다.

제9조(의결 정족수)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산하협의회 포함)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생선도협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회를 둔다.

- ② 학생선도협회는 교감, 인성교육부장, 각 학년 부장, 각 학년 사안담당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교감이 협의회장이 되며, 실무는 인성교육부장이 담당하되, 해당 학년 상별 담당교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학생선도 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선도소협회를 둘 수 있다.
- ⑤ 학생선도소협회는 인성교육부장을 주무로 하여 교감, 인성교육부기획, 상·별점담당교사로 구성한다. 단,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학생(소)선도협회의 운영) ① 학생선도협회는 학생 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소집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학생별점 관련 사안
 2. 학생상점 관련 사안
 3. 포상 및 학생 징계 관련 사항 등
 4. 분쟁 조정
 5. 학생생활지도 계획
- ② 학생선도협회는 포상과 징계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교육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③ 학생선도소협회는 학교 내 봉사 이하의 상별 규정에 따른 관례가 명백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상별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인성교육부 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④ 학생선도협회 및 학생선도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 는 안 되며,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상·별점제 운영) ① 학생선도협회는 학생의 포상과 징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상·별점제를 운영하고, 그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교사는 항상 상·별점 규정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 상·별점제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용하되, 훈육, 훈계로 학생을 지도한다.

4. 지도교사는 해당 지도내용에 따른 상·벌점을 상·벌점 사이트에서 입력, 저장한다.
5. 학생선도협의회 의결에 의해서 규정된 상·벌점수의 50% 내에서 상·벌점을 가감할 수 있다(단, 벌점을 가중하고자 할 때는 징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6. 상·벌점 점수표에 없는 사안의 경우 학생선도 협의회 또는 학생선도소협의회에서 상·벌점을 결정할 수 있다.

상·벌점 점수표					
항목	상점 사안 항목	상점	항목	벌점 사안 항목	벌점
1	불건전한 행위 예방선도	2	1	금지물품 교실 반입	1
2	선행/효행 및 미담(1)	2	2	과제물 불이행	1
3	선행/효행 및 미담(2)	5	3	교재 준비 소홀	1
4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1주일)	2	4	껌이나 칩 함부로 뱉기	1
5	총학생회 임원·학급 정/부회장으로 적극 봉사(학기당)	3	5	교내에서 명찰 패용 않음	1
			6	쓰레기 함부로 버림	1
6	평소 담임업무 보조를 잘함(학기당)	3	7	수업 중 과도한 졸음	1
7	평소 쓰레기 줍기에 솔선수범(학기당)	3	8	수업 중 껌 또는 음식물 먹는 행위	1
8	학교 명예를 드높임	3	9	수업 중 타 교과 학습	1
9	학교 앞 교통지도활동에 적극 참여(학기당)	5	10	음식물 구입 후 실내 반입	1
10	학교 행사시 봉사 활동	2	11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	1
11	환경미화 적극 참여 및 낙서 지우기 등	2	12	주변활동 태만	1
12	환경지킴이 활동(학기당)	5	13	동전치기 및 사행성 오락, 게임	2
13	벌점상쇄를 위한 봉사(1)	2	14	예의, 교양 없는 행동	2
14	벌점상쇄를 위한 봉사(2)	3	15	청소 태만 또는 도망	2
15	징계 교육에 적극적 참여	3	16	교문 앞 및 교내 승용차 승하차	2
16	특별교육 이수자 조정 점수	10	17	교통질서 위반	2
17	사제 동행 산행	3	18	식당, 매점 등에서 줄서기 위반	2
18	축제시 입상한 동아리 부원 중 적극 참여학생	3	19	단체 활동/교외 행사 시 고의적 불참 (1)	2
19	검소한 생활을 실천함	1	20	무단(지각/결과/외출)	2
20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범적임	2	21	조회/학교행사 무단 불참	2
21	용의 복장이 단정함(학기당)	2	22	수업태도 불량	2
22	인사를 잘 함(학기당)	2	23	거짓말하는 행위	3
23	교육감 상 수상	4	24	습득물 허위 신고	3
24	교장급 미만의 상 수상	1	25	무단(조퇴/결석)	3
25	교장급 이상의 상 수상	3	26	출석 확인 시 대리 대답	3
26	대통령 표창	10	27	수업이나 타인 학습방해	3
27	장관급 이상의 상 수상	5	28	욕설 남용 및 경미한 다툼	5
28	체육대회 우승 및 준우승(참가 선수)	2	29	월담 및 유사한 행동	5
29	교복 물려주기	4	30	일과 중 당구장 / 만화방 / PC방 등 출입	5
30	교복 및 책 물려주기	5	31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전자사전 등 허용 물품 제외)	5
31	불우이웃 돕기	2	32	교사의 지도에 불응	5
32	습득물 신고	1	33	수업 중 무단이석	5
33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기(1)	2	34	공적으로 금지된 대외행사 참여	10
34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기(2)	5	35	공문서 변조(출석부, 외출증, 조퇴증 등)	10
35	책 물려주기	2	36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 복제 및 판매	10
36	기기 및 교실비품 청소 및 관리(1학기)	5	37	인터넷 통한 불법 상행위	10
37	정수기 주변관리(2주)	2	38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10

38	주변, 청소활동이 모범적임	2	39	해킹/크래킹 행위	10
39	과제물이 우수함(학기당)	2	40	오토바이 폭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용, 전동킥보드 사용시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	10
40	수업 중 발표가 모범적임(학기당)	2	41	선거규정 위반학생	10
41	정기고사 학급석차 5등 이상 향상	5	42	공공기물 및 게시물 훼손	10
42	학습도우미 활동이 적극적임(학기당)	3	43	책걸상, 건물에 낙서/파손	10
43	학습태도가 모범적임(학기당)	2	44	유언비어, 허위정보나 불건전 정보 유포 행위	10
			45	교내 선도 교육 이행 불성실	10
			46	도서 대출 미납 (15일 이상)	10

- ② 상·별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성교육부 내에 상·별계를 둔다.
- ③ 상·별점기준은 2학기 중 대의원회의에서 현행 유지 혹은 개정을 의결하고, 학생선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학생에게 통보한다.
1. 담임교사는 상·별점 사이트에서 해당 학급의 상·별점을 수시로 확인하여 학급 학생을 지도한다.
 2. 학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담임교사 또는 상·별점 담당자가 상·별점 누계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상점 부여 시 다음 규정에 의거한다.
1. 상점부여는 별첨 자료에 따라 해당 상점을 부여한다.
 2. 상점은 모범학생 추천에 이용될 수 있다.
 3.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동일한 교사가 동일 지도 내용으로 2개월 이내에 중복 부여할 수 없다.
- ⑤ 상·별점에 이의가 있을 때는 1주일 내에 인성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상·별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협의회 또는 학생선도소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⑦ 모든 학생의 상·별점은 해당 학년도 학년말 기준(2월 말일)으로 말소한다. 단, 누적 별점 15점 이상을 보유한 자의 지도는 제12조19항에 따른다.
- ⑧ (누적 별점 산정일) 다음 각 호를 기준일로 하여 제12조제1항의 별점 누적 합계로 지도 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1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1학기 중간고사 시작일로 한다.
 2. 2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1학기 기말고사 시작일로 한다.
 3. 3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2학기 중간고사 시작일로 한다.
 4. 4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2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작일로 한다.
- ⑨ 해당 학년도 11월 이후에는 수시로 제12조제1항의 별점 누적 합계 점수로 지도 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⑩ 별점 누적 합계 점수에 따른 지도 대상학생의 지도단계와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	별점 누적 합계	지도사항	비고
1	별점 누계 14점 이하	담임교사 또는 인성교육 부장 상담	학부모 상담 권장(징계 예방지도)
2	별점 누계 15점 이상 29점 이하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	
3	별점 누계 30점 이상 3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4	별점 누계 40점 이상 4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5	별점 누계 50점 이상 5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6	별점 누계 60점 이상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 ⑪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에 의해 ‘학교 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15점 이상 29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⑫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에 의해 ‘학교 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3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⑬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사회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30점 이상 39점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⑭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사회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⑮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특별 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40점 이상 49점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⑯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특별 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⑰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50점 이상 59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⑮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⑯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이 4차 누적 별점 산정일을 기준으로 15점 이상의 누적 별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2조10항에 따라 지도한다.

제13조(포상의 종류) ① 모범부문의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

- 1. 공로 부문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2. 선행 부문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3. 효행 부문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4. 봉사 부문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을 헌신적으로 돕거나, 학교를 위한 활동이 뛰어난 자에게 수여한다(청결지킴이상, 환경지킴이상, 교통지킴이상).
- 5. 극기 부문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 6. 졸업수상 : 3개년 동안 학업과 품행이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7.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점으로 인한 모범학생 추천은 해당학년 상·별점 누계 2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근면부문의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

- 1. 3개년 개근상 : 3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2. 개근 및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③ 특별상의 시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학력부문 및 기타 수상은 담당부서의 별도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교내외 체육 대회 및 각종 경기에서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한 학생에게 체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각종 예능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학생에게 예능상을 시상할 수 있다.
3.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정보 기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기능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시기) 5월, 10월, 졸업식, 학기초, 학기말, 교내 행사 등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시상 및 추천) 교내 시상 및 외부 포상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서 의거하여 실시한다.

1.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추천) 대외 각종 모범 학생 추천은 공문에 의거 처리하되, 추천 대상자 학생 학급의 담임교사는 추천서 및 공적 내용을 작성하여 인성교육부 포상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학기당 담임은 2명 이내, 비담임은 1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3. (시상 및 추천대상제외) 징계를 받은 자는 학교에서 수여하는 모범상과 대외 모범 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담당기구) 포상 추천은 학생선도 협의회가 주관하며, 필요시 학년 협의회에 추천을 위임할 수 있다. 학급 정·부회장 위주의 추천은 지양한다.

제1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학생선도협의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협의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학생선도소협의회는 학교 내 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심의·의결 후 학교 내 봉사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선도협의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선도(소)협의회는 학생들의 **별점** 내역을 검토 및 반영하여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징계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내 용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1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별점이 15점 이상 29점 이하인 학생	○				
2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별점이 30점 이상 39점 이하인 학생		○			
3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별점이 40점 이상 49점 이하인 학생			○		
4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별점이 50점 이상 59점 이하인 학생				○	
5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별점이 60점 이상인 학생					○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반항, 욕설, 불손한 태도, 도주 등)		○	○	○	○
7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8	불법집회, 불량 동아리 조직 및 운영한 학생		○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
10	타인의 명예훼손, 스토킹한 학생		○	○	○	○
11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	○	○	○
12	공공기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동조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16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17	무단기출로 미인정 결석 중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18	도박(인터넷 도박 포함) 및 사행성 행동을 한 학생		○	○	○	○
19	불건전한 행위로 학교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0	교내 음란행위, 음란물 소지로 미풍양속을 해한 학생		○	○	○	○
21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22	학교의 공공기물, 집기류 및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	○	○	○
2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24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25	환각제(본드, 가스, 마약)를 사용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26	징계(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7	징계 중 위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학생				○	○
29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	○

제1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벌점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학생선도소협의회의 심의·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벌점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거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일~10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⁵⁾

3. 특별교육이수 : **별점사안으로 별점이 부과되거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선도협회의 심의·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 그 기간은 학생선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이수증이 없을 때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별점사안으로 별점이 부과되거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선도협회의 심의·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학생선도협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퇴학을 명한다.

제20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④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봉사는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제2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생선도협의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 ③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협의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22조(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협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 ④ 학생선도협의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학생선도협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 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별첨]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제2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기간 단축

을 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인성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사후 조치) ① 인성교육부의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지속적 관찰·지도를 위해 해당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4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하고,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 ③ 징계가 종료된 학생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별점을 경감하되, 학생선도(소)협의회결정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이수자 : 15점
- 2. ‘사회봉사’ 이수자 : 30점
- 3. ‘특별교육’ 이수자 : 40점
- 4. ‘출석정지’ 이수자 : 50점

제26조(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②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③ 별점은 교육적 수단 및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해당 행위가 징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

제2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자기주도적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되,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29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교내외 시설물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타인의 소유물을 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31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육 활동 방해 행위: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육활동 앞, 교실(단, 실외 공간일 경우) 뒷면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단, 실외 공간일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학생 본인 준비
3호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지도·감시	주의를 준 후 실시,	교과서 요약 등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독 할 수 있는 개 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 부)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 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 동 개선이 없는 경우	남관 1층 상담실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해당 학생 담임(부재시 해당 학생 사안담당, 학년부장, 인성서 요약 등 과제 부장, 교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 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 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 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 도가 필요한 경우	남관 1층 상담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 제 부여

- 제32조(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④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금한다.
- ⑦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제33조(교우관계 및 사제관계)** ① 교내외에서는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② 학생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원을 존중한다.

제34조(이성교제 및 성교육)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를 갖추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 건전한 이성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 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잘못된 성 지식의 위험성을 알고 올바른 성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3. 자신의 신체를 아끼고 사랑한다.
4. 성교육을 통해 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5.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6.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35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등학교 시 및 교내에서는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율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명찰은 교복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학생 신분에는, 활동하기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두발은 단정하게 하되 염색·과마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7. 교내에서 슬리퍼 착용은 금지한다.
 8.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동·하·춘추복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동복 →						← 춘추복 →		← 하복 →				← 춘추복 →

1. 동복 : 11월 1일 ~ 4월 14일
 2. 하복 : 6월 1일 ~ 9월 30일
 3. 춘추복: 4월 15일 ~ 5월 31일, 10월 1일 ~ 10월 31일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6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학**

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단,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② 제36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6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남관 1층 상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환의 대상은 보호자로 한다.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SMS(문자메세지),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

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제3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주변)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모든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급에 전달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⑤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제38조(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과 스포츠 활동 및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창의체험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정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⑤ 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교육 활동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교내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40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41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압수의 요건과 기간, 반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휴대전화의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제36조3항의 표에 따른다.

⑥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걸맞게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방과후활동은 주변 환경 보전 활동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⑥ 교통질서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특히 흡연관련자는 금연학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4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게임이나 인터넷 등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

제44조(양성 평등) 학생들에게 인간의 기본 권리인 평등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또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양성 평등교육을 실시한다.

- ① 남녀 간 성 차이를 인정하며 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는 양성평등의식을 기른다.
- ②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 기회, 조건을 통해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는다.
- ④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 아무렇게나 내뱉는 성적인 이야기, 성차별, 성희롱, 기타 욕설 등을 하지 않는다.

제45조(아동학대 금지) 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④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75조]

제46조(안전지도)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학교는 학년 초에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③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하여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제47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한다.

①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미래희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48조(학교규칙 제·개정의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학교규칙 적용범위) ‘학교규칙’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0조(학교규칙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1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수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본교는 교감, 인성교육부 부장, 인성교육부 기획 또는 학교규칙 제·개정 담당교사, 학생회장(1명), 대의원회 의장(1명), 학생자치법정회 대표(1명), 학부모회 임원(3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 전 회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2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

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53조(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서 첨부
- 4. 학부모 대표회의 의결서 첨부
- 5. 학생회 및 학급회장 대의원회의 의결서 첨부
-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 △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가정통신문 발송) 등
 - △ 학부모 : 학부모 회의, 설문조사 등
 - △ 교원 : 부서협의회, 학년별 협의회, 전체 교직원회의 등
 - △ 학생, 학부모, 교원 : 토론회 실시 등
- 2. 학교규칙 제· 개정 시안 마련 및 보고
 -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 필요 시 투표 또는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 △ 제· 개정 위원장은 신규 대조표 형식으로 작성된 제· 개정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5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단,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②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포하고, 아래 각 호와 같이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개정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단, 심의 결과에 따른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1. 학교구성원이 제·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SMS 발송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신입생, 전입생의 경우에 학교규칙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다.

3. ‘학교 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4. 필요시 학생 대의원회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학칙 준수 및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시한다.

5.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동의서(확인서)를 받는다.

6. 학칙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학기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7.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학칙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제·개정에 반영한다.

제57조(학교규칙 적용 및 환류) ① 제·개정 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칙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방안을 검토한다.

② 학생 옴부즈맨제도, 학교신문고, 학교우체통, 학부모 모니터단, 홈페이지 의견수렴 매뉴얼 운영 등을 통해 학칙 운영과정에 대한 불편 및 불만사항을 상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기말 또는 분기별로 반영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과거 개정안 시행

1.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선도협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첨1> 상·별점 점수표(상점사안/별점일반사안/별점특별사안)



『**휘문고 참인성교육**』 상·별점 점수표



항목	상점 사안 항목	상점	항목	별점 사안 항목	별점	항목	선도협의회 사안 항목
1	불건전한 행위 예방선도	2	1	금지물품 교실 반입	1	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반항, 욕설, 불손한 태도, 도주 등)
2	선행/효행 및 미담(1)	2	2	과제물 불이행	1		
3	선행/효행 및 미담(2)	5	3	교재 준비 소홀	1	2	교권을 침해한 학생
4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1주일)	2	4	겜이나 침 함부로 뱉기	1	3	불법집회, 불량 동아리 조직 및 운영한 학생
5	총학생회 임원 · 학급 정/부회장으로 적극 봉사(학기당)	3	5	교내에서 명찰 패용 없음	1	4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동조한 학생
			6	쓰레기 함부로 버림	1		
6	평소 담임업무 보조를 잘함(학기당)	3	7	수업 중 과도한 졸음	1	5	타인의 명예훼손, 스토킹한 학생
7	평소 쓰레기 줍기에 솔선수범(학기당)	3	8	수업 중 껌 또는 음식물 먹는 행위	1	6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8	학교 명예를 드높임	3	9	수업 중 타 교과 학습	1	7	공공기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9	학교 앞 교통지도활동에 적극 참여(학기당)	5	10	음식을 구입 후 실내 반입	1	8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0	학교 행사시 봉사 활동	2	11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	1	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동조한 학생
11	환경미화 적극 참여 및 낙서 지우기 등	2	12	주변활동 태만	1	10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2	환경지킴이 활동(학기당)	5	13	동전치기 및 사행성 오락, 게임	2	11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3	별점상쇄를 위한 봉사(1)	2	14	예외, 교양 또는 도망	2	12	무단가출로 미인정 결석 중 물의를 야기한 학생
14	별점상쇄를 위한 봉사(2)	3	15	청소 태만 또는 도망	2	13	도박(인터넷 도박 포함) 및 사행성 행동을 한 학생
15	징계 교육에 적극적 참여	3	16	교문 앞 및 교내 승용차 승하차	2	14	불건전한 행위로 학교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16	특별교육 이수자 조정 점수	10	17	교통질서 위반	2	15	교내 음란행위, 음란물 소지로 미풍양속을 해한 학생
17	사제 동행 산행	3	18	식당, 매점 등에서 줄서기 위반	2	16	흥기를 휴대한 학생
18	축제시 입상한 동아리 부원 중 적극 참여학생	3	19	단체 활동/교외 행사 시 고의적 불참 (1)	2	17	학교의 공공기물, 집기류 및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19	검소한 생활을 실천함	1	20	무단(지각/결과/외출)	2	1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20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범적임	2	21	조회/학교행사 무단 불참	2	19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21	용의 복장이 단정함(학기당)	2	22	수업태도 불량	2	20	환각제(본드, 가스, 마약)를 사용하거나 동조한 학생
22	인사를 잘 함(학기당)	2	23	거짓말하는 행위	3	21	징계(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23	교육감 상 수상	4	24	습득물 허위 신고	3	22	징계 중 위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24	교장급 미만의 상 수상	1	25	무단(조퇴/결석)	3	23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학생
25	교장급 이상의 상 수상	3	26	출석 확인 시 대리 대답	3	24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26	대통령 표창	10	27	수업이나 타인 학습방해	3		
27	장관급 이상의 상 수상	5	28	욕설 남용 및 경미한 다툼	5		
28	체육대회 우승 및 준우승(참가 선수)	2	29	월담 및 유사한 행동	5		
29	교복 물려주기	4	30	일과 중 당구장 / 만화방 / PC방 등 출입	5		
30	교복 및 책 물려주기	5	31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전자사전 등 허용 물품 제외)	5		
31	불우이웃 돕기	2	32	교사의 지도에 불응	5		
32	습득물 신고	1	33	수업 중 무단이석	5		
33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기(1)	2	34	공적으로 금지된 대외행사 참여	10		
34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기(2)	5	35	공문서 변조(출석부, 외출증, 조퇴증 등)	10		
35	책 물려주기	2	36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 복제 및 판매	10		
36	기기 및 교실비품 청소 및 관리(1학기)	5	37	인터넷 통한 불법 상행위	10		
37	정수기 주변관리(2주)	2	38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10		
38	주변, 청소활동이 모범적임	2	39	해킹/크래킹 행위	10		
39	과제물이 우수함(학기당)	2	40	오토바이 폭주	10		
40	수업 중 발표가 모범적임(학기당)	2	41	선거규정 위반학생	10		
41	정기고사 학급석차 5등 이상 향상	5	42	공공기물 및 게시물 훼손	10		
42	학습도우미 활동이 적극적임(학기당)	3	43	책걸상, 건물에 낙서/파손	10		
43	학습태도가 모범적임(학기당)	2	44	유언비어, 허위정보나 불건전 정보 유포 행위	10		
			45	교내 선도 교육 이행 불성실	10		
			46	도서 대출 미납 (15일 이상)	10		

위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을 심의한다.

※ 상점우수학생 추천 · 심사 후 모범학생상 표창

(당해 연도 징계대상자는 추천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선도교육 ♣

별점구분	조치사항
1~14점	담임지도
15~29점	교내봉사
30~39점	사회봉사
40~49점	특별교육
50~59점	출석정지
60점 이상	퇴학

교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상담 연계

교내 인성교육부(02-500-9528)
 교내 상담실(02-500-9629)
 교내 보건실(02-500-9555)
 수서명화복지관(02-459-2696)
 수서청소년수련관(02-2226-3611~4)
 강남청소년수련관(02-544-9725~6)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 [stopbullying]
 (02-6222-6060, 02-2100-6118~9[야간])
 경찰청학교폭력신고(국번 없이 117)
 서울 수서경찰서(02-2155-9008)
 강남구 보건소(02-3423-7200)

〈별첨 2〉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청구인 (재심 요청자)	성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주소			
	퇴학 조치된 자와의 관계	본인(), 보호자(), ※해당란에 ○표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교장명		학교명	휘문고등학교
	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1		
퇴학 조치된 날	20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2.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회문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소양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회, 학생동아리 및 그 밖에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5조(명칭) 본회는 ‘휘문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6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고, 학급회의 회원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제9조(승인) 학생자치회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구)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기구를 둔다(예. 대의원회, 학생회, 학생자치법정, 학급회, 동아리연합회 등).

② 대의원회, 학생회, 학생자치법정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치 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학생자치지도협의회) ① 본 회의는 학생선도협의회가 그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생자치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
2.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의 지도
3. 회칙의 제정·개정
4. 학생회의 임원 임명
5. 회비의 책정
6. 예산, 결산, 감사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예산편성) ① 학생자치회의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단계 이전에 학생자치회 예산안을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결산) 학생회장 또는 각 자치기구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칙 개정) 학생자치회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자치기구 회원 1/3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학생자치회 의결사항)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효력 정지)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3장 대의원회

- 제20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② 대의원회 의장은 2학년 학급회장 중에서, 부의장은 1,2학년 학급회장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 제21조(선출 및 임기)** ①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은 학기별(학기 초)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3학년의 경우 학년 초에 1, 2학기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④ 학급의 선거관리는 담임교사가 지명하는 학급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 ⑤ 학급회장단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임기가 1/3 이상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임기가 1/3 이하 남았을 경우 담임교사가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있다.

- 제22조(회의 및 소집)**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위원 1/2 이상 및 대의원회 의장, 학생회장, 지도협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자치지도협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3. 대의원회 및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학생자치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8. 학생생활규정 상·별점표 발의·심의·의결
9.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10.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11.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 제24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③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자치회 지도협의회에 전달한다.
-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대의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 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자격상실)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협의회가 요구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4장 학생회

제1절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제26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자치회의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권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7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 및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회장이 추천하고, 교무회의 인준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별로 1~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제28조(임기 및 회계연도) ①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매 학년도 1학기 시작일로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으로 한다.

- ② 학생회 회계 연도는 학생회 임원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차기 학생회가 구성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자격상실) ①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제57조 (보궐선거) 참조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가 요구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2절 학생회 활동

제30조(구성)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팀 운영
6. 학생옴부즈맨제도 운영
7. 학생회 담당 교사 추천
8. 학생과 관련된 안건 심의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9.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10.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32조(회의 및 소집) ① 학생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치지도협의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부서)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한다. 단, 부서에 동아리연합부를 포함시킨다.

※ 부서 예시

1.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문화부 : 예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생활자치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캠페인 및 홍보 활동,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 불편·불만 사항 모니터 및 해결방안 활동
6. 동아리연합부 : 동아리활동에 관한 사항
7. 정보관리부 : 네티켓 및 인터넷 클린운동에 관한 사항
8. 진로·진학부 :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
9. 인권·복지부 : 학생인권 증진 및 복지향상에 관한 활동

- 제34조(회칙 개정)** ① 회칙의 제·개정은 학생회 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회지도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회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 제·개정안은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학급회

제35조(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인(○○부, △△부, □□부, ◇◇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7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제33조에서 규정한 학생회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 혹은 학급에 필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제38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9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40조(자격상실) ① 학급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협의회가 요구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 ② 학급 정·부회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 받은 날로부터 그 임명을 취소하며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학급 정·부회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생자치법정회

제1절 학생자치법정회 회원

제41조(구성) ① 학생자치법정회는 1,2학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법정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법정회 대표는 2학년 법정회 회원 중에서, 부대표는 1,2학년 법정단 회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팀장은 10명 이내로 선출한다.

③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권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팀장은 해당 팀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42조(대표) ① 대표는 학생자치법정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법정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는 학생자치법정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제43조(선발 및 임기) ① 법정회 회원은 1,2학년 중에서 학년 초에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법정회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4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자치법정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자치법정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학생자치법정 운영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제시
4.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5조(회의 및 소집)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법정회 회원 1/3 이상 또는 학생자치법정회 대표,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46조(자격상실) ① 학생자치법정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협의회가 요구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2절 학생자치법정 운영

제47조(구성 및 역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자치법정회 회원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한다. 학생자치법정 구성원과 그 역할은 학생자치법정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및 역할 예시

1. 판사는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2.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의 회부 대상 학생(이하 해당 학생)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긍정적 선도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 변호인은 해당 학생의 변론을 담당한다.
4. 서기는 법정에서의 발언을 기록하고, 증인선서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5. 배심원은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해당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48조(회부 대상) ①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은 학교 내 봉사 이하의 징계에 해당되는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한다.

제49조(운영) 학생자치법정은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생의 인원수나 학사운영상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제50조(판결 및 긍정적 처벌) 판사는 처벌 위주보다 선도 위주의 긍정적 처벌을 지향한다. 배심원제를 운영할 경우 배심원의 합의문을 참고하여 최종판결한다. 긍정적 처벌의 종류와 적용은 미리 정해 놓은 긍정적 처벌 예시 목록을 참고하여 재판부에서 판결한다.

제51조(판결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처리) 대상 학생은 자치법정의 판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담당 교사 혹은 학생자치법정회는 그 실행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만약 자치법정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하고, 1차 경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학생선도협의회에 회부한다.

제52조(참여자에 대한 보상) 학생자치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법정 활동 시간을 학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1일 2시간 이내).
2. 학교 봉사상에 추천할 수 있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53조(회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② 본 회의 특별 사업을 위하여 특별 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 ③ 특별 기금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특별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 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54조(예산 편성) ① 학생자치회 예산은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②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지도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회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결산) 결산은 예산집행 후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장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임원(학생회장단)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적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임원(회장단)은 다음과 같고 호와 같다.

1. 회장 1명(1학년 중에서 선출)
2. 부회장 2명(1학년 학생 중에서 직접선거로 1명 선출, 차년도 신입생 중에서 간접선거로 1명 선출)

② 임원(회장단)의 구성 및 선출 방식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고, 다득표를 한 후보군(이하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학급임원(학급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방식 및 일반적인 절차는 회장단 선출 규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선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출 순서는 후보자 소견발표 한 후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순으로 한다.
2.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출된 임원단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5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장단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함)는 현 학생회의 추천에 의해 6명 이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이상) 13인 이하를 선임하여 구성한다.(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3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⑤ 학교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필수 반영한 ‘취문고등학교 선거협약’을 사전에 확정·홍보하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1. 합동토론회 횟수 및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
 2. 선거비용 지원액 및 선거활동 규모 결정
 3. 입후보자 간 공정선거를 위한 서약 및 협약
 4.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공정선거감시단 운영 등
- ⑥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⑦ 위원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된 후보군(이하 당선자)이 확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9조(선거일 공고) ① 학생회장단 선거일은 11월 중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장이 결정하고, 늦어도 선거일 14일전까지 공고한다.

제60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61조(입후보 자격)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세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봉사 정신과 통솔력이 있는 자
2. 학생회장, 부회장 후보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및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는 2학년 진급 예정자이어야 한다.

제62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63조(입후보 등록) ①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2. 추천서 1통
3. 보호자 동의서
4. 서약서 1통

② 제①항 제1호 후보등록신청서는 담임교사 및 인성교육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①항 제2호의 추천서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5인과 선거권자 30명 이상(동일학급 10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

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학급 임원 및 학생자치법정 임원은 각 학급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입후보 등록한다.

제64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학생회장단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공고 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3. 우리학교 선거협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 ⑤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 ⑥ 학교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 ⑦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은 학교선관위와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⑧ 교실 순회 선거 운동은 허용된다. 단, 1교실 당 1회에 한하며, 선거 운동원 5인 이하만을 대동할 수 있다.
- ⑨ 피켓 제작을 허용하되, 피켓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한다.
- ⑩ 공식적 벽보 외의 어떤 유인물도 제작·배포해서는 안 된다.
- ⑪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⑫ 입후보자가 규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회지도협의회는 교칙에 의해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66조(예산지원)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선거 운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7조(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2일 후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벽보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200cm 이내로 제한하고, 자세한 사항은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 제68조(소견 발표회 등)** ① 후보자는 개인·합동소견 발표회, 후보 간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후보자마다 찬조 연설에 이어 자신의 소견을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각 연설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③ 각 후보자의 찬조 연설 및 후보자의 소견 발표 원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거쳐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후보자의 소견 발표 내용이 제출한 원고 내용과 다르고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 ④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우리학교 선거협약’에 따라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 ⑤ 기타 사항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69조(투표)**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 ④ 투표방식은 투표용지를 이용하거나 전자투표로 한다. 투표용지를 사용할 경우 작성은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⑤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한다.(단,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한 후 투표권을 행사한다).
- ⑥ 투표용지를 이용할 경우 구체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
- ⑦ 학급별로 투표할 경우, 각 학급의 투표가 완료되면 학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⑧ 전자투표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생의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 업체에 전화로 완료 사실을 알린다.

제70조(개표-투표용지를 이용하는 경우)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디에도 정해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를 한 것
 - 4. 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유효로 한다.
 -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정해진 기표한 것이 (동일 투표지에) 복사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71조(당선)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집계 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을 당선으로 한다.

- ②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1팀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당선자를 정한다.
-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자치회 지도협의회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함께 공고한다).

제72조(재선거, 재량임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차순위 다득표를 한 회장단 후보를 당선으로 하되, 이는 대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1. 부정선거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회장 당선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했을 때
 3. 회장 당선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③ 회장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2학년 부회장 당선자가 회장직을 승계한다. 승계, 사퇴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부회장직은 공석이 발생한지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당선자를 정한다. 이 때 입후보 등록은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3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단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제29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4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교직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직원회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당선무효, 임명 취소)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65조 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다.

제76조(보칙) ① 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투표지를 이용하여 선거를 한 경우,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과거 개정안 시행

1.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자치회 및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학칙 개정을 하는 학년도의 학생회장 선거에 필요한 추가 규정은 선관위에서 임시로 정하여 결정한다.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 보 직 책	학 번	성 명	성 별	인/서명
회장				
부회장				

휘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자

추천서

1. 후보자 인적 사항

후 보 직 책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2. 교사 추천

	직 책	성 명	서 명 (인)
1			
2			
3			
4			
5			

3. 학생 추천

	학 번	성 명	서 명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학생 추천(계속)

	학 번	성 명	서 명 (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휘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생회장단 입후보 서약서

제()학년 ()반 ()번
성명 : ()

본인은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회장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반 선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선거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 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에 의한 당선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
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휘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생회 회장 후보 선거공약

	후보 성명	선거 공약
회장 후보		1.
		2.
		3.

학생회 부회장(2학년) 후보 선거공약

	후보 성명	선거 공약
부회장 후보		1.
		2.
		3.

학생회 부회장(1학년) 후보 선거공약

	후보 성명	선거 공약
부회장 후보		1.
		2.
		3.

공 고

본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20 학년도(2학기) ~ 20 학년도 (1학기)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자 등록 : 7. ()~7. ()
2. 입후보자 공고 : 7. ()
3. 후보자 소견 발표 : 7. () 강당 또는 운동장
4. 투표 : 7. ()
5. 당선자 공고 : 7. ()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본부(인성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휘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__학년 __반)

선거관리위원